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김용태·서천호·이종배

강대식 • 박준태 • 조은희

김위상 · 서명옥 · 유용원

김민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도록 「보험업법」이 개정됨.

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「보험업법」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(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 영)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 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(안 제26조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,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「보험업법」의 준용) 실손의료보험(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)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는 「보 험업법」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(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계약자"는 "가입자"로, "피보험자"는 "피급 여자"로, "보험금"은 "급여금"으로, "보험회사"는 "공제회"로 본다.

제27조(벌칙)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<u> <신 설></u>	제26조(「보험업법」의 준용) 실		
	손의료보험(실제로 부담한 의		
	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		
	한다)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		
	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		
	의 전송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		
	•운영 등에 관하여는 「보험		
	업법」 제102조의6 및 제102조		
	의7(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		
	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		
	계약자"는 "가입자"로, "피보험		
	자"는 "피급여자"로, "보험금"		
	은 "급여금"으로, "보험회사"는		
	"공제회"로 본다.		
<u><신 설></u>	제27조(벌칙) 제26조에 따라 준용		
	되는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		
	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		
	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		
	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		
	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		
	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		
	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		
	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		

	벌금에 처한다.	
<u>제26조</u> (과태료) (생 략)	<u>제28조</u> (과태료) (현	l행 제26조와
	같음)	